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의료직 채용공고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근무할 역량 있는 직원을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 채용분야 및 인원 : 총 46명

채용 직렬(직급)	근무 예정지	채용예정인원
의료직(간호사) 6급	순천병원(광주의원)	14
의료직(물리·작업치료사) 6급	인천병원	3
	창원병원	5
	대구병원(구미의원)	2
	순천병원(광주의원)	2
	대전병원	2
	경기요양병원	1
의료직(물리· <u>작업</u> 치료사) 6급	창원병원	2
	대구병원(구미의원)	2
	순천병원(광주의원)	1
	대전병원	1
	동해병원	1
의료직(방사선사) 6급	인천병원	1
	태백병원	2
의료직(임상병리사) 6급	태백병원	2
	동해병원	1
의료직(산업위생사) 6급	창원병원	2
의료직(청능·청각사) 6급	대구병원	2

- ※ (채용직렬 및 소속병원 중복지원 불가) 입사지원서는 1인당 1회, 1개 분야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채용직렬 및 소속병원을 달리하여 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 ※ 인사규정 제15조 제6항(채용)에 의거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근무기관에서 계속 근무(전보제한)
- ※ 대구·순천병원의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직렬의 경우 임용 후, 병원 운영사정에 따라 구미의원, 광주의원으로 전보 배치 예정

□ 근무기관 소재지

근무기관	소재지
인천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6(구산동)
창원병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중앙동)
대구병원 (구미의원)	대구 북구 학정로 515(학정동)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가산로 14, 6층(진평동))
순천병원 (광주의원)	전남광주 순천시 조례 1길 24 (조례동) (전남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72-8, 1층)
대전병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37(법동)
태백병원	강원 태백시 보드미길 8(장성동)
동해병원	강원 동해시 하평로 11(평릉동)
경기요양병원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465-4

□ 근로조건

○ (시보임용) 관련 규정에 의거 3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 성적이 양호한 경우 정규직으로 임용

※ 시보임용된 직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가 ‘가’로 평정된 경우 임용제한

※ 시보기간은 「인사규정」 제19조, 「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 제32조에 의거 적용

○ (보수수준) 공단 내부규정에 따름(경력기간 등에 따라 호봉산정)

※ 신규직원 초임은 알리오(ALIO) 공시자료 참고

2.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붙임 1-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붙임 1-2** 참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10년)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10년)

※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한함(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의료인에 한함(간호사)

○ (병역사항)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 (연령요건) 연령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60세 미만(정년)인 자)

○ (기타)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채용직군별 자격요건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구분	직렬	응시자격
의료직 6급	간호사	간호사 면허 소지자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
	작업치료사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방사선사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임상병리사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산업위생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청능·청각사	청각사 인증서 또는 청능사 자격증 소지자

3. 채용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응시원서 기재사항을 토대로 응시자격 및 서류 심사) → 직업성격 검사 및 면접전형 → 서류검증 → 최종 합격자 발표 → 임용후보자 등록 및 신체검사 → 임용

□ 채용일정

○ 인천병원, 동해병원, 경기요양병원

전형절차	일정
채용공고	▪ '26. 9. 18.(금) ~ 26. 9. 28.(월)
응시원서 접수	▪ '26. 9. 21.(월) ~ 26. 9. 28.(월) 17:30:00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 '26. 10. 8.(목)
직업성격검사(온라인)	▪ '26. 10. 8.(목) ~ '26. 10. 12.(월) 11:00:00
면접전형 및 서류검증	▪ '26. 10. 13.(화) ~ '26. 10. 16.(금)
최종합격자 통보	▪ '26. 10. 21.(수)
임용후보 등록	▪ '26. 10. 21.(수) ~ '26. 10. 28.(수)
임용일(예정)	▪ '26. 11. 2.(월) 예정

○ 창원병원, 대구병원, 순천병원, 대전병원, 태백병원

전형절차	일정
채용공고	▪ '26. 9. 18.(금) ~ 26. 9. 28.(월)
응시원서 접수	▪ '26. 9. 21.(월) ~ 26. 9. 28.(월) 17:30:00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 '26. 10. 8.(목)
직업성격검사(온라인)	▪ '26. 10. 8.(목) ~ '26. 10. 12.(월) 11:00:00
면접전형 및 서류검증	▪ '26. 10. 13.(화) ~ '26. 10. 15.(목)
최종합격자 통보	▪ '26. 10. 20.(화)
임용후보 등록	▪ '26. 10. 20.(화) ~ '26. 10. 23.(금)
임용일(예정)	▪ '26. 10. 28.(수) 예정

4.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26. 9. 18.(금) ~ '26. 9. 28.(월)
- 접수기간: '26. 9. 21.(월) ~ '26. 9. 28.(월) 17:30:00까지(휴일 포함, 24시간 상시접수)
- 접수방법: 입사지원 사이트(<https://comwel4.saramin.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우편, 방문, 이메일을 통한 접수 불가
- 문의처(소속병원 인사담당자)

소속병원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인천병원	032-500-0124	incheon9in@comwel.or.kr
창원병원	055-280-0315	changwon9in@comwel.or.kr
대구병원(구미의원)	053-715-7714	daegu9in@comwel.or.kr
순천병원(광주의원)	061-720-7234	suncheon9in@comwel.or.kr
대전병원	042-670-5441	daejeon9in@comwel.or.kr
태백병원	033-580-3241	taebaek9in@comwel.or.kr
동해병원	033-530-3212	donghae9in@comwel.or.kr
경기요양병원	031-371-5225	gyeonggi9in@comwel.or.kr

5.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26. 10. 8.(목) 예정

※ 채용홈페이지 및 개인 SMS

- (서류전형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	합격자 범위
1~3명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4~10명	$[(\text{채용예정인원} - 3\text{명}) \times 3\text{배수}] + 15\text{명}$
11명 이상	$[(\text{채용예정인원} - 10\text{명}) \times 2\text{배수}] + 36\text{명}$

※ 최하위 동점자 전원 선발

- (정량평가) 응시원서 상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항목별 점수 부여

- 학교성적, 전문자격, 전산자격, 공통자격 등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이며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자기소개서)

- 열린소통, 지원분야 직무이해, 전문성, 책임감(각 문항별 500자 이내 작성)
- 경력사항·경험사항과 관련한 회사명 등 직·간접적으로 인적사항을 유추 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서류전형 항목별 배점

직렬	서류전형(정량평가 100점 만점)		우대가점 (최대가점 10점)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산업위생사	○ 학교성적(30점)	○ 직무경력(30점) ○ 전산자격(20점) ○ 전문자격(20점)	○ 취업지원대상자 (10/5점) ○ 장애인, 산재, 의상자(5점) ○ 기타(5점), 경력가점(3점)
청능·청각사	○ 직무경력(30점) ○ 전산자격(20점)	○ 전문자격(30점) ○ 공통자격(20점)	

※ 각 평가항목 내 평가기준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하며 평가세부기준은 비공개하므로, 보유하고 있는 자격사항을 모두 기재 권고

○ (학교성적) 최종학교 성적기준으로 평가

- ※ (간호사) 「간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관련 학과 전공 이수자에 대해서 국가 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채용직무 연관성이 높음으로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학점) 배점 부여
- ※ (물리·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산업위생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관련 학과 전공 이수자에 대해서 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채용직무 연관성이 높음으로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학점) 배점 부여
- ※ (산업위생사) 「산업보건법시행령」 [별표29]에 의거 채용직무 연관성이 높음으로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학점) 배점 부여 및 전공학과 수집

※ (대학교) 전체평균 학점으로 점수 평가(편입, 학점은행제는 별도 적용)

- ① 성적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입
- ②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최종학교로 인정
- ③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성적만 산정
- ④ 편입의 경우 편입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 ⑤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은행제 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 ⑥ 전공심화의 경우, 전공심화 이수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 (고등학교 및 검정고시)* 응시자가 붙임의 내신성적 확인서에 5개 교과구분 영역에서 각 1개 교육과목씩 총 5개 교육과목을 선정하여 기재한 교육과목 성적의 합계로 평가

* 산업위생사 직렬에 한함

- ① 해당과목의 내신등급, 성취도, 점수구간, 석차, 5등급제가 있는 경우, 내신등급, 성취도, 점수구간, 석차, 5등급제 순으로 배점 산출
- ② 적용기준은 한가지로 통일(1개 과목은 '내신등급'으로, 다른 1개 과목은 '점수구간'으로 기재 불가)
- ③ 응시자가 5개 교과구분 영역에서 각 1개 교육과목씩 총 5개 교육과목을 선정하여, 5개 교육과목 성적의 합계로 평가
- ④ 각 교육과목 성적은 한학기로 산정(단, 성적증명서에 학년 성적만 기재된 경우 학년 성적을 선정)

1과목당 배점	6.0	5.2	4.4	3.6	2.8	2.0
내신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5등급	6~7등급	8~9등급
성취도	A+	A	B+	B	C+,C	D+이하
점수구간	95점 이상	95점 미만 ~90점 이상	90점 미만 ~ 85점 이상	85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석 차 [(등수/총인원) * 100]	4% 이하	4% 초과 ~ 11% 이하	11% 초과 ~ 23% 이하	23% 초과 ~ 60% 이하	60% 초과 ~ 89% 이하	89% 초과
5등급제	수	-	우	-	미	양, 가

교과구분	세 부 과 목
국어	국어, 국어 I, 국어 II, 문학, 독서와 문법,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등
영어	영어, 기초영어, 실용영어, 영어 I, 영어 II, 영어독해, 영어작문, 실용영어회화, 영어회화, 영어독해와 작문 등
수학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통계, 자연수학, 기하와 벡터, 수학의 기본, 확률, 통계, 확률과 통계 등
사회	사회, 통합사회, 한국사(국사), 사회문화, 법과정치, 세계지리, 한국지리, 세계사, 경제, 경영, 동아시아사, 정치, 정치와법, 윤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와 윤리 등
과학 또는 전문교과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 과학탐구실험, 물리(학), 물리(학) I, 물리(학) II, 화학, 화학 I, 화학 II, 지구과학, 지구과학 I, 지구과학 II, 생명과학(생물), 생명과학(생물) I, 생물과학(생물) II,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정보통신, 회계, 회계원리, 전산회계, 컴퓨터 일반 등

○ (직무경력) 채용 자격요건에 명시된 자격증 취득 이후, 채용예정직과 동일한 업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서류전형 합격 이후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

○ (전산자격)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 활용능력 1급·2급, 워드프로세서(구 1급)

※ 동일평가항목 내 2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전문자격)

구분	항목
간호사	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및 아동 분야, ②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에서 발급한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 보유자, ③ 「대한간호협회」에서 발급한 보험심사관리사*

* 2023.10.01. 이전 주관처 : 한국간호교육평가원

※ 2가지 항목 이상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구분	교육명	주관처	이수시간	비고
물리치료사	보바스(Bobath) 기본강좌	한국보바스협회	120시간 이상	-
	중추신경계발달치료(NDT)	대한재활의학회	120시간 이상	-
	통합중추신경계발달치료(INDT)	국제의과학 아카데미	120시간 이상	-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PNF, IPNF)	대한고유수용성 신경근촉진법학회	120시간 이상	-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OMPT)	대한정형도수 물리치료학회	120시간 이상	-
	칼텐본-에비언스(OMT)	칼텐본-에비언스 학회	120시간 이상	-
	대한기능도수물리치료(FMT)	대한기능도수 물리치료학회	120시간 이상	-
	할리윅(Halliwick), 바드라가즈(Bad Ragaz Ring Method) 등	국제수중치료협회	54시간 이상	인천병원, 대구병원

※ 2가지 항목 이상에 해당할 경우 합산하여 최대 20점까지 점수부여 가능

구분	교육명	주관처	수료여부	비고
작업치료사	연하재활기능적전기자극치료	대한연하재활학회	수료	-
	연하재활전문가과정(성인기본과정): Adult-Basic Course	대한연하재활학회	수료	-
	운전재활전문가과정	한국운전재활학회	수료	30시간 이상
	연하장애 전문치료과정 기초	대한연하장애학회	수료	-
	전문인지재활치료사 기본(Basic)강좌	대한인지재활학회	수료	-
	치매와 인지장애의 인지재활 전문가 과정 (구. 인지재활전문가과정 part 1 & part 2)	대한뇌신경재활학회	수료	-
	AMPS 인정평가자 양성과정	대한지역사회 작업치료학회	수료	-

※ 2가지 항목 이상에 해당할 경우 합산하여 최대 20점까지 점수부여 가능

구분	항 목
방사선사	■ 국내전문방사선사(전문방사선사시험원) - 자기공명영상(MRI)전문, 전산화단층촬영(CT)전문, 유방전문, 임상초음파전문(복부, 산부인과, 유방, 심장, 혈관, 근골격), 투시전문, 영상정보관리전문, 치료전문, 혈관 중재전문, 핵의학전문, 치과전문, 방사선의학물리사, 방사선안전관리전문, 방사선정도 관리전문 ■ 국제전문방사선사(전문방사선사시험원) - 자기공명영상(MRI)전문, 전산화단층촬영(CT)전문, 유방전문, 치료전문 등 ■ 진폐건강진단 정도관리 흉부촬영분야 교육 수료증 또는 특수건강진단 정도 관리 흉부촬영분야 교육 수료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상병리사	■ 전문임상병리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 혈액, 수혈, 화학, 면역, 미생물, 조직, 핵의학, 세포, 육안, 품질관리, 유전 ■ 진폐건강진단 폐기능검사 정도관리(판정) 교육 수료증 또는 특수건강진단 폐활량 검사 정도관리 교육 수료증(대한임상병리사협회) ※ 2023년 이전 발급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위생사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보건지도사, 인간공학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인간공학기사 자격취득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분석사 자격 해당자* * ① 산업보건(위생)학, 환경보건(위생)학, 환경공학, 위생공학, 약학, 화학, 화학공학 관련 학위 취득자 또는 ② 화학 관련 학위 취득자 중 분석화학(실험) 3학점 이상 이수자

※ 2가지 항목 이상에 해당할 경우 합산하여 최대 20점까지 점수부여 가능

구분	항목
청능·청각사	임상병리사, 전문 청능사, 언어재활사1·2급, 사회복지사 1·2급, 간호조무사

※ 2가지 항목 이상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공통자격) 한국어능력시험(KBS 한국어진흥원), 한국실용글쓰기검정(한국어능력평가협회), 한국사능력검정(국사편찬위원회)

※ 2가지 항목 이상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서류전형 공통자격 배점이 부여되는 청능·청각사 직렬에 한함

□ 우대가점(사회형평적 요소 등)

항목/점수		세부평가기준
취업지원 대상자*	10점	•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10%를 가점하는 자
	5점	•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5%를 가점하는 자
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	5점	•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3점	•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장애인	5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사상자	5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생활보호 대상자	5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보유 여성	5점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기타	5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자립준비청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에 한함
경력가점	최대 3점	• 근로복지공단병원(구. 한국산재의료원 포함)에서 청년인턴·기간제·공무직으로 채용예정직과 동일업무 분야 6개월 이상 근무한 자(근무경력에 따라 최대 3점 차등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순위 부여

※ 우대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유리한 것 한가지만 적용

6. 직업성격검사

□ 직업성격검사 : '26. 10. 8.(목) ~ '26. 10. 12.(월) 11:00:00 예정

○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 실시방법 : 면접전형 이전 개별 안내한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실시

7. 면접전형

□ 면접전형

- (인천·동해·경기요양) '26. 10. 13.(화) ~ '26. 10. 16.(금) 예정

- (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 '26. 10. 13.(화) ~ '26. 10. 15.(목) 예정

○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중 기한내 직업성격검사 실시 완료자에 한해
면접전형 기회 부여

○ 장소 : 각 채용 소속병원

※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구체적 전형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별도 공지

※ 면접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 지참

- 전자(모바일)신분증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한 모바일운전면허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한해 인정

○ 면접전형 평가방법 및 배점: 집단 또는 개별 면접 실시

- NCS 분류체계에 따른 직무기술서상을 바탕으로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
대인관계), 직무수행능력(도전정신, 전문성, 직업윤리, 자기개발) 등 평가

- 가산점수를 포함한 면접점수가 평균 5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

□ 사회 형평요소 우대

항목/점수		세부평가기준
취업지원 대상자*	10점	•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10%를 가점하는 자
	5점	•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5%를 가점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순위 부여

□ 증빙서류 제출(면접전형 시 반드시 지참)

지원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며, **채용 관련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시 직접 제출**

※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제출일 기준)로 한하여 인정. 다만 해당 발급기관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인정

구분	제 출 서 류	발급 유효기간
공통 사항	① 해당 채용분야 면허(자격)증 사본 1부	기한 없음
서류 전형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석·박사의 경우 학위증명서 포함) * 학교성적을 수집하는 직렬에 한함(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산업위생사)	기한 없음
	③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전 학년 성적의 평균평점이 기재된 것에 한함) * 편입의 경우, 편입이후 학교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 전공심화의 경우, 전공심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 학교성적을 수집하는 직렬에 한함(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산업위생사)	기한 없음
	④ 병적증명서 1부(남성의 경우에 한하며, 세부항목 모두 필수 기재)	서류검증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①-1 (직무경력) 경력증명서(퇴직한 경우), 재직증명서(재직 중인 경우)	기한 없음
	①-2 (직무경력) 해당직군 업무 관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서류검증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 (전산자격) 정보화자격증 사본	기한 없음
	③ (전문자격) 채용계획상 반영된 해당직군 별도 추가자격요건 관련 증빙서류	기한 없음
	④ (공통자격) 공통자격증 사본 * 서류전형에서 공통자격 배점을 부여하는 청능·청각사 직렬에 한함	기한 없음

우대가점 (사회형평 적 요소 등 해당자에 한함)	①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국가보훈) 대상자 증명서	서류검증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 (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③ (장애인) 장애인증명서(지자체 발급)	
	④ (의사상자) 의사상자 증서 사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확인서 *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⑤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 증빙 서류 사본	
	⑥ (경력보유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⑦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명의), 혼인관계증명서(부/모) * 부 또는 모 한국국적 취득 전: (부/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부 또는 모 한국국적 취득 후: 기본증명서(상세-이전국적표기), 국적취득사실증명서	
	⑧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⑨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수급자확인서, 보호종료확인서	
	⑩ (경력가점) 근로복지공단병원(구. 한국산재의료원 포함)에서 청년인턴·기간제· 공무직으로 채용예정직과 동일업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재직)증명서	기한 없음

8.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인 SMS로 개별 통보

- (인천·동해·경기요양) '26. 10. 21.(수) 예정

- (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 '26. 10. 20.(화) 예정

○ (선발기준) 서류검증 결과 결격(부적격) 사유가 없고, 가산점수를 포함한 면접점수가 평균 5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내에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또는 퇴사 시 공단사정에 따라 후보합격자 임용 가능

9. 임용후보자 등록 및 신체검사

□ 임용등록 및 신체검사 기간

- (인천·동해·경기요양) '26. 10. 21.(수) ~ '26. 10. 28.(수) 예정
- (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 '26. 10. 20.(화) ~ '26. 10. 23.(금) 예정

○ 신체검사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소속병원에서 실시

○ 임용등록 시 제출서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및 각서 등

※ 공단 소정양식으로 최종 합격자 발표시 공지

□ 임용일

- (인천·동해·경기요양) '26. 11. 2.(월) 예정
- (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 '26. 10. 28.(수) 예정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안내'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에서 허위 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작성 및 면접시험 과정에서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 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수집,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 및 입사지원서 이메일, 자기소개서 등에 학교, 가족관계, 출신지, 성별 등은 간접적 표현으로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직·간접적 표현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는 모든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서류접수 마감시간(2026. 9. 28.(월) 17:30:00)까지 인터넷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접수만 가능(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하고 접수번호(수험번호) 부여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는 최종 제출 후 지원서의 수정이 불가하며, 관련 사유로 응시원서를 이중 제출 하는 경우 중복지원으로 간주하며 모두 불합격 처리됩니다.

○ 응시자격 및 자격증 유효여부 등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6. 9. 28.(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도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9호, 「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 제30조(신체검사) 3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전형별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180일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응시자(탈락자 포함)에게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구비받아 응시자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을 전형단계별 평정표에 기록하여 영구 보관

○ 입사지원자가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 부터 14일 이내 채용접수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채용 이의신청 양식 작성 후 이메일(해당 소속병원 이메일) 로 스캔본 송부
* (이의신청 처리 예외) ① 해당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②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 및 지적재산권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③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및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 문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하지 않음

○ 부정합격자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서는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며, 관련자는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은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사실 인지 시 「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헬프라인 레드휘슬(<http://www.redwhistle.org>)

* (구제시기) 피해발생 인지 후 즉시

* (피해자 구제)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후 적정 전형단계 시험 기회 부여

- 공단 내부규정 등에 따라 이사장의 허가 없이 겸직 및 영리활동(사업자 등록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병원 인사담당에게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6의4. 공단 입사 이전 또는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9.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염성 질환자 및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인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붙임 1-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붙임 3] 직무기술서

【 NCS 기반 직무기술서 : 의료직(간호사) 】

직무 분야	간호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특화분류)
		06.보건/의료	02.의료	02.간호	01.임상간호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다양한 공공의료사업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료, 교육, 연구 등 다양한 의료 관련 사업 수행				
직무수행 내용	○ (간호수행) 환자의 건강 회복 및 증진을 위해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 기술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및 건강관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 ○ (간호행정관리) 원활한 간호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행정, 물품, 시설 및 환경 관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				
능력 단위	○ (간호수행) 01. 의료·진료준비 02. 의료·진료 지원 03. 환자관리 04. 환자 교육 및 상담 05. 환자상담 06. 특수검사 ○ (간호행정관리) 01. 간호행정 02. 물품관리 03. 시설 및 환경관리				
전형방법	○ 공고문 참조				
일반요건	○ 공고문 참조				
자격요건	○ (필수) 간호사 면허 소지자 ※ 「간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관련 학과 전공 이수자에 대해서 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채용직무 연관성이 높음으로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학점) 배점 부여				
필요 지식	○ (간호수행) 의사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른 치료 지식, 약품의 종류 및 특성, 의료 장비별 특성 및 사용법, 질환 별 환자에 대한 매뉴얼, 응급상황에 대처 관련 지식, 보건 의약관계 법규, 간호 사정 종류 및 방법에 대한 기초 지식, 수술 및 시술종류와 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성인 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지역사회 간호학, 정신 간호학, 기본 간호학, 의학용어에 대한 기초지식 ○ (간호행정관리) 처방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의료장비별 특성 및 사용법, 환자 간호업무 우선순위, 약품의 종류 및 특성과 주의사항, 의학용어 관련 영어, 보험처리에 대한 지식(산재환자, 급여환자 등), 민원처리에 대한 해결방법				
필요 기술	○ (간호수행)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호흡·맥박·혈압·체온·혈당 측정능력, 투약능력(주사 요법, 항암요법, 수혈요법 등), 외국인 환자 관리 및 간호 업무수행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 질환·수술·검사·진료에 대한 환자와 상담하는 능력, 환자 관리능력(투약, 신체검사, 검사 결과 알려주기 등), 각종 처치 및 처치 보조기술, 환자 의무기록 확인능력, 우선순위 결정능력, 환자에 대한 간호 사정 능력 ○ (간호행정관리) 의료장비 점검 및 관리능력, 업무보고서 작성능력, 약품·집기 비품 관리 능력				
직무수행 태도	○ (공통) 업무수행 지침 및 기준 준수,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재확인하는 꼼꼼함, 성실하고 꼼꼼한 업무 수행태도,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정직함, 환자에 대한 배려와 친절한 태도, 맡은 업무에 대한 끈기, 협력적인 태도, 칭찬과 질책을 담담이 받아들이고,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는 태도, 지속적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태도(시간, 체력, 감정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학습태도, 환자에 대한 관찰능력				
직업기초 능력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기술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				
참고 사이트	○ www.ncs.go.kr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 NCS 기반 직무기술서 : 물리치료사 】

직무 분야	물리치료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6.보건/의료	01.보건	01.의료기술지원	02.물리치료
주요사업	○ 산재노동자 및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료서비스, 전문재활서비스 등의 기능 수행				
직무수행 내용	○ (물리치료) 만성통증 및 신체기능장애를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물리적인 방법 즉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 기능훈련,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 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를 적용하는 업무 등				
능력 단위	○ (물리치료) 01. 해부학 02. 생리학 03. 운동치료 04. 전기치료 05. 광선치료 06. 수치료 07. 물리치료 검사 및 평가 08. 정형계 물리치료 09. 신경계 물리치료 10. 심폐피부계 물리치료 11. 보장구 의지 12. 스포츠 물리치료 13. 보건행정 14. 물리치료실 및 병원 인증 및 각종 평가관리 15. 통계 분석				
전형방법	○ 공고문 참조				
일반요건	○ 공고문 참조				
교육요건	○ 공고문 참조				
자격요건	○ (필수)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관련 학과 전공 이수자에 대해서 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채용직무 연관성이 높음으로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학점) 배점 부여				
필요 지식	○ (물리치료) 인체의 구조, 형태, 병리에 대한 지식, 운동치료의 개념과 운동중재의 원리 그리고 운동기법 적용에 따른 적응증, 금기증에 대한 지식, 물리적인자(전기, 광선, 물) 응용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각 치료별 적용부위, 특성 및 금기증과 적응증에 대한 지식,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각 질환(근골격계, 신경계, 심혈관계, 스포츠 손상등)을 이해하고 질환별 치료법에 대한 지식, 보조기와 의지의 생체 역학을 고려하여 사용목적과 적응증의 이해, 절단부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의지의 선택과 착용방법에 대한 이해, 보건통계 관련 지식, 의료폐기물 관련 지식, 감염관리 지침 및 유해물질 안전관리 지식, 의료관계법규, 보건통계 및 의학통계 기초지식 등				
필요 기술	○ (물리치료) 운동치료의 목적에 따른 기법 적용과 신체 부위에 따른 치료적 운동을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 여러 질환의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들을 적용 기술, 여러 질환의 특성에 맞는 물리적 인자(전기, 광선, 물)치료적용 기술, 질환별(근골격계, 신경계, 심장호흡계)을 파악하고 평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 환자기록지를 보고 평가와 치료계획을 설정할 수 있는 기술,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적 운동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기술, 환자에게 알맞은 보조기와 의지를 선택하여 올바른 착용 방법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술, 신의료기술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 능력, 의료장비 관리 능력, 보고서 작성 및 전산 업무를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 및 정리 능력 등				
직무수행 태도	○ (물리치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학습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산출하려는 태도,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소통 태도, 성실하고 꼼꼼한 업무 수행 태도, 환자에게 친절한 태도, 지속적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태도(시간, 체력, 감정 등), 합리적 문제 해결 능력, 행정관리 능력, 갈등 해결 능력, 유관부서 업무 이해 능력, 연구 자료에 대한 치밀한 분석 태도, 연구 결과물을 명료하게 정리하려는 자세				
직업기초 능력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기술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				
참고 사이트	○ www.ncs.go.kr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 www.kpta.co.kr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홈페이지				

【 NCS 기반 직무기술서 : 작업치료사 】

직무 분야	작업치료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6.보건/의료	01.보건	01.의료기술지원	03.작업치료
주요사업	○ 산재노동자 및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료서비스, 전문재활서비스 등의 기능 수행				
직무수행 내용	○ (작업치료) 발달장애우들의 발달증진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체나 기구를 활용한 감각· 활동훈련, 작업적 일상생활훈련, 작업수행 분석 및 평가 업무, 그 밖의 작업요법적 훈련·치료 업무				
능력 단위	○ (작업치료) 01. 해부학 02. 생리학 03. 작업치료학 04. 작업치료 평가 05. 신경계 작업치료 06. 신체장애 작업치료 07. 정신과 작업치료 08. 아동 작업치료 09.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 10. 수단적 일상 생활활동 11. 보조기 및 의지학 12. 인지재활 13. 삼킴장애재활 14. 환자 및 보호자 교육 15.작업치료실 및 병원 인증 및 각종 평가관리 16. 의료 장비 관리				
전형방법	○ 공고문 참조				
일반요건	○ 공고문 참조				
교육요건	○ 공고문 참조				
자격요건	○ (필수) 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관련 학과 전공 이수자에 대해서 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채용직무 연관성이 높음으로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학점) 배점 부여				
필요 지식	○ (작업치료) 작업수행 분석 및 작업치료 평가와 결과 해석에 대한 지식, 클라이언트 중재를 위한 목표를 수립할 수 있는 지식, 작업수행 분석 및 평가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지식, 클라이언트 중심 중재와 전문적 작업치료를 위한 지식, 클라이언트 및 전문가와 효과적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에 관한 지식, 보건통계 관련 지식, 의료폐기물 관련 지식, 감염관리 지침 및 유해물질 안전관리 지식, 의료관계법규, 보건통계 및 의학통계 기초지식 등				
필요 기술	○ (작업치료) 작업치료 중 특히 감각통합기능 검사 및 평가 수행 능력, 작업치료 중재 및 서비스를 실행하고 관리하는 능력(환자의 신체 기능 증진, 움직임 증진, 감각기능 향상 활동, 인지기능 향상 활동, 삼킴장애 훈련,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및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훈련, 감각통합치료 등), 보고서 작성 및 전산 업무를 위한 컴퓨터 활용 능력,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 및 정리 능력 등				
직무수행 태도	○ (작업치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학습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산출하려는 태도,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소통 태도, 성실하고 꼼꼼한 업무 수행 태도, 환자에게 친절하는 태도, 보호자에게 성실하게 교육하는 태도, 지속적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태도(시간, 체력, 감정 등), 합리적 문제 해결 능력, 행정관리 능력, 갈등 해결 능력, 유관부서 업무 이해 능력, 연구 자료에 대한 치밀한 분석 태도, 연구 결과물을 명료하게 정리하려는 자세				
직업기초 능력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기술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				
참고 사이트	○ www.ncs.go.kr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 www.kaot.org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홈페이지				

【 NCS 기반 직무기술서 : 방사선사 】

직무 분야	영상의학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6.보건/의료	01.보건	01.의료기술지원	04.방사선검사
주요사업	○ 생명을 존중하며,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최상의 진료, 교육, 연구, 공공 보건의료 등 다양한 의료관련 사업수행				
직무수행 내용	○ (영상의학) 환자의 질병 및 장애를 진단하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사선 장비를 조작하여 방사선 촬영을 수행하는 업무 등				
능력 단위	○ (영상의학) 01. 환자 교육 및 관리 02. 방사선 검사 03. 피폭 관리 04. 정도 관리 05. 영상 관리 06. 장비관리				
전형방법	○ 공고문 참조				
일반요건	○ 공고문 참조				
교육요건	○ 공고문 참조				
자격요건	○ (필수) 방사선사 자격 면허소지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관련 학과 전공 이수자에 대해서 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채용직무 연관성이 높음으로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학점) 배점 부여				
필요 지식	○ (영상의학) 방사선 안전관리, 의료기사법 및 방사선 안전 관리법, 초음파 검사에 관한 지식, 촬영방법에 대한 지식,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지식, 조영제 부작용 관련 사항, 방사선방호의 기준 및 원칙, 방사선 병리학, 영상 해부학, 인체 해부학, 인체 생리학, 공중 보건학, 보건물리학 개론 지식, 방사선학 개론 지식, 방사선 검사 이론 지식, 디지털 영상처리 관련 지식, PACS 및 원격화상 시스템 관련 지식 등				
필요 기술	○ (영상의학) 방사선 안전 관리, 방사선 촬영코드 기록 및 관리 능력, 초음파 업무 능력, MRI 촬영능력, 촬영정보 수집 및 습득 능력, 방사선 일반촬영능력, 전산화단층촬영(CT) 능력, 방사선 관련 의료장비 관리 능력, 원서 및 최신 방사선학회의 지식 등의 영어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언어능력, 외국 환자들과의 회화 능력 등				
직무수행 태도	○ (영상의학) 기기 조작의 정확성, 안정사고 발생 예방을 우선시하는 태도,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한 자기개발,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태도, 환자에 대한 친절한 태도, 작업 협력 및 배려하는 자세, 관련부서 업무이해와 상호존중, 정확한 촬영을 위한 성실하고 꼼꼼한 태도				
직업기초 능력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기술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				
참고 사이트	○ www.ncs.go.kr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 NCS 기반 직무기술서 : 임상병리사 】

직무 분야	임상병리 (진단 검사)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6.보건/의료	02.의료	04.임상지원	02.임상병리
주요사업	○ 산재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료서비스, 전문재활서비스 등의 기능 수행				
직무수행 내용	○ (임상병리) 환자로부터 채취한 가검물이나 인체의 생리적 기능 변화를 검증된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사하고 질병의 진단, 치료, 예후 판정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의료기술 업무 등				
능력 단위	○ (임상병리) 01. 채혈관리 02. 정도관리 03. 임상병리(진단혈액, 임상화학, 미생물, 진단면역, 수혈의학, 유전자학, 생리기능학, 세포학, 진단병리학, 핵의학-체외)검사 04. 검체 및 결과 관리 05. 수혈관리 06.의료폐기물관리 07. 감염 및 안전관리 08. 의료장비관리 09. 검사정보 시스템 운용관리 10. 진단 시약 및 물품 관리 11. 검사실 및 병원 인증 및 각종 평가관리				
전형방법	○ 공고문 참조				
일반요건	○ 공고문 참조				
교육요건	○ 공고문 참조				
자격요건	○ (필수)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관련 학과 전공 이수자에 대해서 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채용직무 연관성이 높음으로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학점) 배점 부여				
필요 지식	○ (임상병리) 검사에 따른 검체 채취 관련 지식, 검체별 용기의 종류(항응고제 포함)에 따른 채혈 및 채취에 관한 지식, 검사 종류에 따른 검체량과 검체 보관 및 운송 조건에 관한 지식, 정도관리 목표에 부합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 지식, 임상병리 검사에 적합한 검사 수행 절차와 검사결과 보고에 관한 지식, 임상병리학(혈액학, 임상화학, 노화학, 미생물, 수혈의학, 유전자학, 신경생리학, 진단병리학 등)에 대한 지식, 보건통계 관련 지식, 의료폐기물 관련 지식, 감염관리 지침 및 유해물질 안전관리 지식, 의료관계법규 등				
필요 기술	○ (임상병리) 검체 채취 및 검사 수행 능력(장비 운용, 현미경 검사, 검사 기술 등), 정도 관리 수행 및 평가 능력, 검체 관리 및 결과 관리와 해석 능력, 신의료기술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 능력, 의료장비 관리 능력, 검사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능력, 보고서 작성 및 전산 업무를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				
직무수행 태도	○ (임상병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학습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산출하려는 태도,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소통 태도, 성실하고 꼼꼼한 업무 수행 태도, 환자에게 친절한 태도, 지속적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태도(시간, 체력, 감정 등), 합리적 문제 해결 능력, 행정관리 능력, 갈등 해결 능력, 유관부서 업무 이해 능력				
직업기초 능력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기술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				
참고 사이트	○ www.ncs.go.kr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 NCS 기반 직무기술서 : 산업위생사 】

직무 분야	산업 위생사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6.보건/의료	02.의료	02.보건지원	05.지역사회위생관리
주요사업	○ 산재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료서비스, 전문재활서비스 등의 기능 수행				
직무수행 내용	○ 산업보건사업,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분석업무 및 작업환경측정실 업무, 신규물질 분석방법 선택 및 자료 검토후 적용,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업무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 업무, 분석실내 행정업무, 산업위생직 장비구매 및 관리업무와 각종 소모품관리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분석 및 측정에 관한 업무, 타기관에서 의뢰받은 물질의 분석 및 결과발송 ○ 직장복귀 지원 업무 관련 재해환자가 병원에서의 치료 및 재활 후 직장예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함 ○ 업무관련성 평가업무 관련 재해신청자가 주장하는 신청 상병이 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해 발생되었는지의 관련성을 직업력 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관련성 평가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				
능력 단위	○ 01. 작업환경측정 02. 특수건강진단 분석 03. 보건관리대행 사업장 대행 업무 04. 직장복귀 사업 지원 업무 05.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 06.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및 시료분석, 07.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및 시료분석, 08. 측정 미수금 회수업무, 09. 업무 관련성 평가업무 재해신청자 면담 및 직업력조사, 현장조사,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 10. 직업 복귀 지원업무 산업재해자 면담, 현장조사, 정밀 직무조사				
전형방법	○ 공고문 참조				
일반요건	○ 공고문 참조				
교육요건	○ 공고문 참조				
자격요건	○ (필수)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산업보건법시행령」 [별표29]에 의거 채용직무 연관성이 높음으로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학점) 및 전공학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필요 지식	○ 산업위생학, 작업취생측정 및 평가, 작업환경관리 대책,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 산업 독성학, 작업환경관리 실무 관련 지식				
필요 기술	○ 작업환경측정실 전반업무,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업무 능력, 작업환경측정 기관평가 업무 및 정도관리업무 준비,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시료분석 업무 능력, 직장 복귀 지원 업무 능력, 업무관련성 평가 관련 직업력 조사·현장조사·업무관련성 평가서 작성 능력				
직무수행 태도	○ (공통) 업무수행 지침 및 규준 준수,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재확인하는 꼼꼼함, 성실하고 꼼꼼한 업무 수행태도, 기기 조작의 정확성,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우선시하는 태도,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한 자기개발,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태도, 환자에 대한 친절한 태도, 작업협력 및 배려하는 자세, 관련부서 업무이해와 상호존중, 정확한 분석을 위한 성실하고 꼼꼼한 태도 등				
직업기초 능력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기술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				
참고 사이트	○ www.ncs.go.kr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 NCS 기반 직무기술서 : 청능·청각사 】

직무 분야	청각사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6.보건/의료	01.보건	01.의료기술지원	10.청각관리
주요사업	○ 산재노동자 및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료서비스, 전문재활서비스 등의 기능 수행				
직무수행 내용	○ 청각손실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대인관계, 심리사회적, 교육적 및 직업적 기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행동청능평가, 전기생리청각평가, 보청기적합관리, 이식형청각기기적합관리, 청능훈련, 중추청각기능·전정기능·이명의 재활, 청력보존, 청각관리교육연구개발, 청각관리지원, 청각기기생산 및 청각산업경영을 수행				
능력 단위	○ 01. 행동청능평가 02. 보청기적합관리 03. 이식형청각기기적합관리 04. 청능훈련 05. 중추 청각기능재활 06. 전정기능재활 07. 이명재활 08. 청력보존 09. 청각관리교육연구개발 10. 청각기기생산 11. 청각산업경영 12. 전기생리청각평가 13. 청각관리지원				
전형방법	○ 공고문 참조				
일반요건	○ 공고문 참조				
교육요건	○ 공고문 참조				
자격요건	○ (필수) 청각사 인증서 또는 청능사 자격증 소지자				
필요 지식	○ (기초) 청각해부생리, 심리음향, 청력보존, 관련법규 ○ (평가) 행동청능평가, 전기생리청각평가 ○ (보청기) 보청기적합, 이식형청각기기적합, 청각보조기기, 청각기기 제작 및 수리 ○ (재활) 청능재활, 이명재활, 전정기능재활, 중추청각기능재활, 아동청각학, 노인청각학 ○ (실습) 평가실습, 보청기실습, 재활실습				
필요 기술	○ 청각 검사 수행 능력(장비 운용, 청력 검사, 검사 기술 등), 정도관리 수행 및 평가 능력, 청력 검사 결과 관리와 해석 능력, 의료장비 관리 능력, 검사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능력, 보고서 작성 및 전산업무를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 등				
직무수행 태도	○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학습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산출하려는 태도,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소통 태도, 성실하고 꼼꼼한 업무 수행 태도, 환자에게 친절함 태도, 지속적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태도(시간, 체력, 감정 등), 합리적 문제 해결 능력, 해정관리 능력, 갈등 해결 능력, 유관부서 업무 이해 능력 등				
직업기초 능력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 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참고 사이트	○ www.ncs.go.kr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붙임 4] 채용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성명		채용분야	
이메일		연락처	
이의신청 내용	※ 신청시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발표일부터 14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육하원칙에 의해 자세하게 기술하되,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 주시고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만 기재 바랍니다. ○ 채용과 무관한 문의, 질의사항,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 회신은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기간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